





-01 R&D 세액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내국인이 연구·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세액 공제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국가전략기술	40~50%	30~	40%
신성장·원천기술	30~40%	20~	40%
일반 R&D	25%	8%	0~2%

-02 R&D 사전심사 도입배경

도입 배경



R&D 세액공제는 조세절감 효과가 크지만, 연구·인력개발 활동 여부, 공제 대상 비용의 범위 등에 대해 납세자와 국세청 간 이견 발생



세무조사 등으로 잘못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수년간 공제받은 세액 + 가산세) 부과 ⇒ **납세자의 부담 가중**



-03 R&D 사전심사 혜택

심사 혜택

사전심사결과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분야별 전문지식을 보유한 기술심사관이 연구개발활동을 검토하며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제 요건 및 보완사항을 안내

-04 R&D 사전심사 신청요건

신청인

내국법인과 거주자(개인사업자)

신청기한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까지 (가급적 여유를 두고 신청 권장)



법인세 신고에 누락된 경우에도 사전심사를 받아 경정청구에 활용할 수 있음

신청방법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세무서 민원실, 지방청 법인세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R&D 사전심사 심사방법

서면심사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방식의 서면심사 원칙으로 진행



제출서류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나 보안상 이유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이 진행될 수 있음

재심사신청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 신청가능



최초 심사 담당자 제외, 합동검증 등을 통해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



-06 R&D 사전심사 상시 신청 가능

〈 사전심사 신청기한 〉

법인세(소득세) 신고 전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
	법인세(소득세) 신고 후에는 <u>신고누락분에</u> 대하여 경정청구,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이전까지 신청가능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확인받아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법인세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7 R&D 사전심사 신청방법



-08 R&D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서

신	법 인 명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전 청 인	대표자 성명		담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재 지 (이메일)	(중) 전자우편(E-mail) :	@	€	

	①신고구분	□ 정기신고, □ 기한 후 신고, □ 경정청구, □ 수정신고										
신		연	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	사 신청금액							
청 대 상	②과세연도	③합계 (④+⑤+⑥+⑦)	④일반 연구개발비	⑤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⑥국기전략기술 연구개발비	⑦인력개발비						

「조세특례계한법시행령」제9조제1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전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지방국세청장 귀하

위임 장	위임자 (청구인)				대리인	
		성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P))		

작성방병

- ① 신고구분란은 정기신고,기한 후 신고,경정청구,수정신고 중에 선택합니다.
- ② 과세연도란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과세연도를 기재합니다.
- ③ 합계:세액공제 구분별 사전심사 신청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④~②: 연구개발비 명세서(제2-1호서식) 1.총괄의 세액공제 구분별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m*(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연구개발 보고서

- ※ 여러 연구과제에 공통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연구과제별로 각각 작성하지 않고 한 문서에 여러 연구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1. 연번 및 연구과제명
- 2. 연구 개발 개요
- 가. 목표
- 나. 주요내용
- 다. 연구개발 기간
- ※ 실제 수행한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으로서, 해당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려는
 ① 과학적기술적 진전 또는 ②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가 무엇인지 드러나야 함
- 3. 연구수행 내용 및 성과
- 가, 수행부서, 연간 투입인력 현황
- 해당 연구과제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 명세
- 나, 연간 위탁·공동연구개발 현황
- 위탁·공동연구개발 수행 기관, 수행 기간, 주요 내용 등
- 다. 실험 등 연구개발을 위해 활용한 방법
- 연구노티가 있는 경우 연구노티로 대체 가능
- 라. 연구개발 주요 성과
- 특허권 신청 실적, 실패 시 실패 내용 등

붙임.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 전담부서의 조직·직원 현황 및 연구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연구요원 등의 급여지급 명세서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 명세서
- 기타 연구·인력개발비 관련 명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09 R&D 사전심사 명세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 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_	_							
순번	연구	세액공제	자체 연	구개발비	위탁 및 공동	정부지원사업	인력	합계
군인	과제명	구분	인건비	재료비 등	연구개발비	민간부담금	개발비등	급계
1	A 44	신성장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X	
	합계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 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 등 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	금액
					A 41-41	전담	YYYY.MM.DD ~ YYYY.MM.DD	20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연구 소 <i>장</i>	25	전달	YYYY.MM.DD ~ YYYY.MM.DD	50	
					B 44	전당	YYYY.MM.DD ~ YYYY.MM.DD	30	
					중노국기				

합계

3. 재료비 등 명세서

순번	연구 과제명	계정과목	내 역 (견본품, 부품, 시약류 구입비, 장비 임차료 등)	금액
,	A 41-74	<i>早</i> 著	00 부품 외 10건	
1	A FOR	견본품	전본품 구매 품목	
		합계		

210mm×297mm(신문용지 54gmf(재활용품))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 2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4. 위탁 및 공동 연구개발비 발생 명세서

	1 × 0) O L I '	" - 1 - 0	0 11 1				
			수탁	및 공동 괴	나게 정보			
순번	연구 과제명	상호 또는 성명	사업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전담부서 (연 구소) 또는 소속	수행 분 야	금액
,	अग्र व	<i>₹5</i>	000-00-00000	YYYY, MM,DD	YYYY, MM,DD	기업부설 연구소	설제	
1	-4×4.2	성명	000000-0	YYYY, MM,DD	YYYY, MM,DD	00 대학교 △△△ 교수	검증	
			핫 계					

5.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발생 명세서

	– .							
ᆺᇄ 연구			민간 부담금					
순번	과제명	연구 착수일	연구 종료일	지원 기관	주관/참 여	수행 분야	현금	현물
1	과제명	YYYY, MM,DD	YYYY, MM,DD	중기부	참여	<i>플렛쬼개발</i>		
			합.	L 계				

6. 인력개발비 등

조특령 별표6.2. 가.~ 아. ¹⁾ (내일채움공제 제외)	내일채움공제 ²⁾	합계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 하는 비용을 말하며 위탁훈련과 직업능력개발훈련, 기술지도, 국내외 위탁훈련비 등이 있음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1.인건비 : 연구원 등의 급여대장

1. 근원이 그 근무권 등의 답어다

2.재료비 : 연구개발업무에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원재료시약류 등재료비구입명세서

3.위탁개발비 : 위·수탁계약서 및 관련증빙(위탁과제 집행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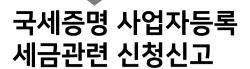
4.수탁개발비 : 과제협약서, 과제비 집행내역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mf(재활용품))

^{*} 참여율은 과제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며, 연구원별 참여율 합계가 100%가 되도록 계산

-10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화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Or

홈택스 검색창에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입력

세금신고 납부 고지・환급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신청/신고	지급명세서 장려금 · 연말: 료제출 · 공익법인 전자기부금		상담ㆍ불복ㆍ고충 세무대리 제보ㆍ기타 납세관리	바로가기 접기 ~
즉시발급 증명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소득확인증명서(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	·사업자등록증명	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모범납세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 휴업사실증명 · 소득확인증명서(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 세특례 신청용)	메뉴펄침 중지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세특례 신청용)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환급사실 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사실여부	· 공동사업자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체납내역	·대표자등록내역 ·신고사실없음 ·충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시 지점사업자등록 번호 직권말소 ·전용계좌개설여부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기타 민원 증명	· 거주자증명서 발급 신청 · 취업후학자금 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2]	·비거주자등의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 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공직선거후보자용) 소득세 및 종합부동 산세 납부체납증명서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 민원증명 원본 확인(수요처 조회)	·민원서류 발급 제한 및 위변조방지 🛨	·세무서 방문 민원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휴페업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공동사업자·법인 공동대표 승인 (+)	·개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휴.폐업.재개업 신고 (+)	· 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일반신청/결과조회 (+) ·체납 관련 신청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송달장소 신고/변경 신고	・사업용-공익법인 계좌 개설/조회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 신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신고 ·1세대1주택자 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제외신고) · 세율적용시 주택수 산정제외 신청	·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합산배제 진단 · 법인 주택분 일반세율 적용 신청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부가가치세 관련 신청신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신청	·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 세 환급신청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 신청	·스크랩등(금관련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 세 납부사실 확인신청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 신청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과세이연한 퇴직소득세액 환급신청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신고	·사업장현황 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소득내역 확인·부인신청/결과조회 ④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원천세 관련 신청-신고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포기 신청			
소비제네 관련 신청신고	·개별소비·교통에너지환경세 (+)	·인지세 (+)	·주세 (+)	·면세미납세 (+)	

-11 우선심사 제도

지원항목	내용
① 우선심사 대상	미래성장 세정지원기업, 벤처기업 인증목적, 신성장.원천기술*
② 진행상황 유선안내	심사 담당자는 신청서 접수일로보터 14일이 경과하는 경우 진행상황에 대해 전화 안내 (현재까지 확인된 인정·불인정 사항, 예정심사종결일, 보완요청사항)
③ 심사결과 신속통지	심사종결 후 관리자 결재가 끝나면, 심사결과 통지서를 우편발송 전 팩스로 먼저 발송

^{* &#}x27;사전심사 우선처리 확대'는 경제활력 제고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 역량강화 TF」의 민생경제지원 분과 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1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중소기업에게 국세청이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줌으로써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고용·투자 등을 유인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



고용·설비투자 등 공제·감면 대상 거래, 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관련 의사결정을 한 이후 세액공제·감면의 적용가능 여부, 공제받을 금액 등을 문의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서면으로 답변

2-02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절차

- 1 특정한 개래 (중소개업)
 - 고용·설비투자 의사결정 또는 거래(행위) 개시

- 2 컨설팅 신청
- 의사결정한 날 또는 거래(행위) 개시 이후 언제든지 신청
- 경정청구 신청 전

- 3 컨설팅 제공 (전담부서)
- 신청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공제·감면 등 안내
- 4 결과 관리 (전담부서)
- 신고내용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제외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2-03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신청 대상

법인세 공제·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사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 이내인 법인

신청 범위

고용 증대·설비 투자 등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 세액공제·감면 적용 가능 여부, 공제 가능 금액 등을 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R&D 사전심사 제도 이용)

신청 기한

- ① 세액공제·감면과 관련되는 특정한 거래 또는 행위를 개시하거나 그 의사결정을 한 날 이후 언제든지
- ② 과거 사업연도에 세액공제·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부분은 경정청구를 하기 전까지

^{컨설팅} 제 공

관할 지방국세청장(법인세과장)은 중소기업이 컨설팅을 신청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세액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2-04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절차

제출 서류

- ①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서
- ② 고용이나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입증자료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제도 혜택

컨설팅 내용에 따라 신고한 경우

- ①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 ② 추후 컨설팅 내용과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③ 세무상 불확실성 해소와 납세협력비용 절감

